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공공건축추진단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, 공공시설건축과는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,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별 분장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반시설국”을 “시설사업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2. 환경·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
23. 상·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지설 등 환경기초시설·방재시설의
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
24. 전기·가스·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 제목 “(기반시설국)”을 “(시설사업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반시설국”을 “시설사업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
10.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
11. 국가·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

12.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

제18조의 제목 “(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)”을 “(공공시설건축과 및 정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건설청에 2022년 6월 6일”을 “건설청 시설사업국에 2023년 6월 30일”로, “공공건축추진단을”을 “공공시설건축과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공건축추진단에 단장”을 “공공시설건축과에 과장”으로, “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”을 “과장은 4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설치”를 “설치와 설계·시공·준공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공건축추진단”을 “공공시설건축과”로 한다.

2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·예산관리 및 운영지원·특화에 관한 사항

3.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·시행

4.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

5. 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

6.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 문화재 조사에 관한 사항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하부조직)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, 도시계획국 및 <u>기반시설국</u> 을 둔다.	제4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<u>시설사업국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도시계획국) ①·② (생략)	제9조(도시계획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20. (생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1.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u>
<u><신설></u>	<u>22. 환경·재해 관련 영향평가협약에 관한 사항</u>
<u><신설></u>	<u>23. 상·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·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</u>
<u><신설></u>	<u>24. 전기·가스·열 등 에너지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</u>
제10조(<u>기반시설국</u>) ① <u>기반시설국</u> 에 국장 1명을 둔다.	제10조(<u>시설사업국</u>) ① <u>시설사업국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
1. ~ 6. (생략) <u>7.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u> <u>8. 환경·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</u> <u>9. 상·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·방재 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</u> <u>10. 전기·가스·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11.·12. (생략)</u> <u>제18조(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)</u> ① <u>건설청에 2022년 6월 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을 둔다.</u> ② <u>공공건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</u>	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9.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</u> <u>10.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 관리 및 예산관리</u> <u>11. 국가·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</u> <u>12.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</u> <u>7.·8. (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)</u> <u>제18조(공공시설건축과 및 정원)</u> ① <u>건설청 시설사업국에 2023년 6월 30일----- 공공시설건축과를 ---.</u> ② <u>공공시설건축과에 과장 ----- 과장은 4급-----</u> <u>-----</u> <u>---</u>.
---	---

③ <u>단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2. <u>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</u> 3. <u>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</u> 4. <u>국가·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</u> <u><신 설></u> 6. <u>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</u> 7. <u>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</u> <u><신 설></u> ④ <u>공공건축추진단</u>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⑤ (생략)	③ <u>과장</u>----- -----. 2. <u>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·예산관리 및 운영지원·특화에 관한 사항</u> 3. <u>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 계획의 수립·시행</u> 4. <u>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</u> 5. <u>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</u> 1. ----- ----- <u>설치와 설계·시공·준공 등</u>----- ----- <u><삭 제></u> 6. <u>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 문화재 조사에 관한 사항</u> ④ <u>공공시설건축과</u>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[별표 4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

(제18조제4항 관련)

공공시설건축과(준속기한: 2023년 6월 30일)

총계	5
일반직 계	5
3급 또는 4급 이하	5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5